

국제해사기구(IMO)제21차 총회 (ASSEMBLY)참가보고

이 강 근/선박검사기술협회 검사제도부

I. 일반사항

- 회의명 : 제21차 총회
- 기간 및 장소 : '99. 11. 15 - 11. 19,
영국 런던 IMO본부
- 총회 대표단
 - 해양수산부
 - 안전관리관 이용우
 - 안전계획담당관 김중의
 - IMO 파견관 임기택
 - 주영해양수산관 김영석
 - 담당사무관 김영소
 - 외교통상부
 - 주영 대사관 대사 최성홍
 - 주영 대사관 공사 김중재
 - 주영 대사관 경제참사관 박진호
 - 외교통상부 사무관 문성환
 - 산하단체
 - 선박검사기술협회 이사장 박희열, 주임
검사원 이강근
 - 한국선급 회장 이항규, 정부대행검사부
장 김종원, 런던사무소장 전영기

II. 회의 내용

1. 총회 개최('99. 11. 15)

- 총회 의장직 수행
 - 우리나라 최성홍 주영대사가 각국 수석
대표회의를 주재하고 이어서 총회 개회
를 선언하였으며,
 - 제21차 총회에서 토의될 의제를 채택
하고, 새로운 의장단을 선출하였음.
 - * 새 의장단
 - 의 장 : 핀란드 주영대사
Mr. Petti Salolainen
 - 부의장 : 파나마 수석대표
Mr. Ruben Reyna
이집트 주영대사
Mr. Adel El-Gazzar
- 사무총장 개회사
 - 금세기 마지막 총회임을 역설하고
IMO 설립 후 각종 해난 사고가 현저
하게 감소하게 된 점에 대하여 회원국
에 감사를 표함.
 - 특히 "국제안전관리규약(ISM Code)"
의 시행 및 "선원의 훈련 자격증명 및 당
직근무기준에 관한 국제협약 (STCW)"

개정으로 새천년에는 인적요소의 개선에 중점을 두고, 새로운 협약의 제정보다는 기존협약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해상안전을 확보하고 해양환경을 보호할 것을 제안함.

2. 기조연설

- 해양수산부 이용우 안전관리관은 오후 본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통하여,
 - 이사국 수를 현행 32개국에서 40개국으로 늘리는 IMO 개정협약의 조속한 발효를 위하여, 각 회원국이 적극 협조하여야 함을 역설하고,
 - 선박검사증서 유효기간을 연장(4년→5년)하는 “검사 및 증서발급 조화제도(HSSC)”의 범세계적이고 통일적인 시행을 촉구하였으며,
 - 또한, 우리나라가 “국제안전관리규약(ISM Code)”을 국제발효일(2002. 7. 1.)보다 1년 앞당겨 시행하였음을 소개함.
- ※ 연설 후 각국 대표들의 많은 박수와 지지를 받았음.

3. 주요토의내용

〈11월 16일〉

- 분과위원회
 - 각 대표단들의 신임장 심사를 위한 분과위원회를 칠레, 피지, 튀니지아, 유크라이나, 아랍에미레이트로 구성하였음
 - 행정, 예산 및 법률에 관한 제1위원회와 기술사항을 논의할 제2위원회가 구성되었음
- 국제해사기구협약 및 회원국 현황보고(의제6,7)
 - 국제해사기구협약 개정(안) 및 국제해사기구의 새로운 회원국 가입(안)에 대

한 보고를 받음

※ 우리나라를 포함한 다수의 국가가 이사국 수를 현행 32개국에서 40개국으로 증가시키는 개정안에 대하여 조속히 시행되어야함을 강조하고 새로운 회원국(통가) 가입을 승인함

- 제20차 총회이후 개정되었거나 새로이 채택 발효된 협약에 대한 사무총장의 보고가 있었으며, 발효요건이 충족되지 못하여 발효되지 못한 협약 및 결의서가 조속히 발효될 수 있도록 회원국의 협조를 당부함
 - 제20차 총회 이후 국제해사기구의 활동 및 업적에 대한 이사회에 보고서를 사무총장이 총회에 보고하였으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다수의 회원국이 사무총장의 노력에 감사를 표함
- 제20차 총회이후 국제해사기구의 활동에 관한 이사회 보고(의제8)
 - 제20차 총회이후 국제해사기구의 활동 그중 특히 벌크선 안전, 국제안전관리 코우드의 제정 등 해상안전에 관한 사항 및 국제해사기구 기술협력 사업의 구조조정 및 동 기간동안의 기술협력 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음
 - 2000년대 국제해사기구의 사업목표에 관한 총회 결의안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다수국의 지지를 받아 승인되었음
- 해사안전위원회 결과보고 및 권고사항에 대한 검토(의제9)
 - 해사안전위원회 부의장인 남아공의 WATT씨가 해사안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였음
 - 제20차 총회이후 '74SOLAS협약의 개정(INF CODE의 강제화) 및 '74 SOLAS 협약 개정(비로로 여객선의 헬기착륙지역 설치요건 폐지)초안을 채택하였음

- 산적화물선의 안전에 관한 영국의 "Derbyshire" 호의 사고조사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는 것에 동의하였음
- 이밖에도 국제안전규약의 조기시행, 유해액체 물질 및 가스운반선의 안전에 관한 사항, 기국준수에 관한 사항 및 방사선 물질의 안전수송 및 수색구조에 관한 시행 등과 각 소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보고 받았음.

〈11월 17일〉

○ 법률위원회 보고 및 권고사항에 관한 검토(의제10)

- 법률위원회 의장인 캐나다의 Popp씨가 지난 회기 동안의 법률위원회 활동에 관한 주요사항으로 재정보증 협약, 난파선 제거협약 및 선박의 연료유에 의한 해양오염사고에 대한 책임 및 보상에 관한 협약 제정 현황을 보고하였음
- 선원 및 여객의 사망 및 상해 시 적용할 선주의 강제보험가입에 관한 국제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여객보상제도와 선원보상제도를 별도로 추진할 것이며, 여객보상은 현행 아테네협약을 보완하거나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는 것을 검토중임을 보고하였으며, 선원보상제도에 관해서는 IMO/ILO의 합동 작업반에서 다룰 것임을 보고함.
- 난파선제거에 관한 국제협약 초안 중 협약의 적용범위를 배타적경제수역으로 하자는 제안 및 동 협약에 환경적 위험요소를 포함하자는 제안에 대하여 대부분의 대표가 동의하였음을 보고함.
- 선박의 연료유에 의한 해양오염사고에 대한 책임 및 배상에 관하여는 별도의 협약으로 하기로 하였으며, 규정의 적용범위를 오염피해에 대한 보상만으로 제한하기로 하여 다음

회기 중 1주간의 시간을 배정하여 외교회의를 개최기로 함.

- 상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1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함.

○ 해양환경보호위원회의 보고 및 권고사항(의제11)

- 해양환경보호위원회 의장인 호주의 Jullian씨가 지난 회기동안의 해양환경보호위원회의 활동사항에 관하여 보고하였음.

- 해양오염방지협약의 개정현황을 보고하였음.
- OPRC협약에 유해 및 유독물질을 포함시키기 위한 의정서를 제42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에서 승인하였으며, 동 의정서 채택을 위한 외교회의를 2000.3월에 개최할 예정임을 보고함.
- 벨러스트에 포함된 유해한 수중 미생물로 인한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협약, 해양오염방지협약의 시행, 선박으로부터의 대기오염방지에 관한 협약 등에 대한 해양환경보호위원회의 논의사항을 보고하였으며, 제2위원회에서 상세하게 논의하기로 함.
- 기국차체평가, 해난조사 코우드의 개정 및 항만국 통제절차 제정에 관한 총회결의 초안 등 기국시행에 관한 사항과 산적액체가스소위원회의 논의 사항을 보고함.

○ 기술협력위원회의 보고 및 권고사항에 대한 검토(의제12)

- 기술협력위원회 의장인 페루의 Fernando Dalesio씨가 지난 회기동안의 기술협력 활동에 대해 보고하였음.

- 국제해사기구 기술협력계획에 따르면 업무수행, 다음회기의 기술협력위원회의 정책 및 업무전략 개발, 정부기관들과의 양해각서체결 등 관련기관

들과의 협력관계 구축 및 기술위원회 업무수행결과 평가를 위한 일반원칙 및 방법론 제정 등에 관해 보고하였으며, 개발도상국들 중 여러나라에서는 국제해사기구의 기술협력활동이 자국의 해상안전확보에 기여한 것에 대하여 감사를 표하였음

- 간소화위원회의 활동 결과보고 및 권고 사항에 대한 검토
 - 간소화 위원회 의장인 라이베리아의 Bachu씨가 제20차 총회 이후 간소화 위원회가 1998년 및 1999년에 개최되었음을 보고하였음.
- 외교회의에 관한 보고(의제4)
 - 벌크선 안전에 관한 1997년의 외교회의에서 SOLAS 협약 제12장이 1997. 7.1. 발효하였음을 보고함.
 - 1993.3.1-12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선박역류에 관한 유엔/국제해사기구 외교회의에서 “1999년 선박역류에 관한 국제협약”를 채택하였으며, 동 협약은 10개국이 비준한 후 6개월 후 발효할 예정임을 보고함.
- 1972년 쓰레기 및 기타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협약의 이행에 대한 보고
 - 현재까지 77개국이 수락하였으며 런던협약의 1996년 의정서는 현재까지 6개국이 수락하였음을 보고함.
 - 1972 런던협약 및 1996년 의정서의 준수에 있어 많은 체약당사국이 협약준수에 장애가 있음을 인지하고 추후 작업계획에 협약준수문제를 회의의 독립된 의제로 포함시키기로 하고 런던협약의 전문가 그룹에서 투기가 가능한 폐기물질의지침을 개발하였음을 보고함.

<11월 18일>

□ 행정위원회(제1위원회) 논의사항

- 기술협력 위원회의 보고를 토대로 기술 협력에 관하여 논의하였음.
 - IMO 기술협력 사업 계획, 예산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심도있는 토의를 하였고
 - 새로운 사업계획에 대한 기술협력 위원회의 역할 및 차기 회계년도(2000-2001년) 기술협력정책 및 개발전략 등에 관하여 승인하였음.
 - 「2000년대 IMO 목표설정에 관한 총회결의서」에 기술협력에 대한 사항을 강조하는 새로운 총회결의서를 채택하자는 사무국의 제안에 관하여 논의하였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작업반을 구성하여 논의 후 보고하기로 하였음.

□ 기술위원회(제2위원회) 논의사항

- “전세계 해상 조난 및 안전 시스템(GMDSS)의 이동위성통신 시스템에 관한 기준”, “항행 계획지침” 및 “ISM Code의 시행에 관한 결의서”를 채택하였음
- “이동식 해상 구조물에 종사하는 인력의 훈련”, “안전한 인력운용에 관한 원칙”, “도선사 승·하선 설비”, “증서발급관련 불법행위” 등에 관한 총회 결의서가 채택되었음.

□ 본회의 논의사항

- 해사 훈련 계획
 - 세계해사대학(WMU) 운영규칙 개정(안)을 승인하였으며, IMO 세계아카데미가 이태리 정부기금으로 설립되어 제20차 총회이후개발도상국 등에 대해 제공한 훈련 내용에 대한 보고와 IMO 세계해사법연구소의 학술활동에 대한 보고가 있었음.
 - IMO의 각종 협약 이행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모델 코스에 대하여 승인하였음.
- 분담금 체납-운영자본기금

- 1999년 7월 1일 현재 분담금 납부 및 운영기금의 사용 현황과 분담금 미납국가에 대한 Waiver 적용(IMO협약 제 56조)에 관하여 보고 하였음.
- 아이티 및 코피부아르등이 Waiver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되었음.

<11월 19일>

제21차 IMO회의 개최 현황

- 주요 해운국가(Category A, 8개국)
 - 중국, 일본, 미국, 영국, 러시아, 그리스, 이태리, 노르웨이
- 주요 하주국가(Category B, 8개국)
 - 프랑스, 독일, 캐나다, 네델란드, 스웨덴, 브라질, 인도, 아르헨티나
 - ※ Category A 및 B의 이사국수는 각 8개국으로 무투표 당선
- 지역대표국가 (Category C, 16개국)

왕이사국	입후보 이사국	신규이사국
한국, 싱가포르, 멕시코, 스웨덴, 호주, 이집트, 인도네시아, 필리핀, 파나마, 사이프러스, 남아공, 핀란드, 폴란드, 라이베리아 알제리아(미입후보) 튀니지아(미입후보)	한국, 싱가포르, 멕시코, 스웨덴, 호주, 이집트, 인도네시아, 필리핀, 파나마, 사이프러스, 남아공, 핀란드, 라이베리아, 사우디, 나이지리아, 레바논, 케냐, 터어키, 모로코, 바하마, 몰타	한국, 싱가포르, 멕시코, 스웨덴, 호주, 이집트, 인도네시아, 필리핀, 파나마, 사이프러스, 남아공, 핀란드, 터어키, 모로코, 바하마, 몰타

- ※ 신규이사국 : 터어키, 모로코, 바하마, 몰타
- ※ 탈락국가 : 사우디, 나이지리아, 라이베리아, 레바논, 폴란드, 케냐

4. 선박검사기술협회 주요활동

- 이사국 피선을 위한 정부활동 지원
 - 정부대표단, 해양수산관, IMO파견관, 주영대사관의 현지 교섭활동 지원
 - 관련회원국 초청 만찬 참석으로 득표활동 참여
- 총회 회의의제 검토 지원
 - 총회 회의 및 분과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회의 진행상황 파악 및 회의 결과 정리작업 지원
 - 총회 발언 내용 작성 지원

5. 향후 대책

- IMO 회의참가 적극 추진
 - 2000년도 참가 계획
 - 복원성·만재흡수선 및 어선안전소위원회(SLF)
 - 선박설계 및 설비소위원회(DE)
 - 해사안전위원회(MSC)
 - ※ 2000년 이후는 매년 4-5개 회의 참석 계획
- IMO 업무의 전문가 지속적 양성 추진
 - 국제협약 전담 인력 보강
 - 여건 성숙시 IMO 본부에 파견 추진
- IMO 업무 지원체제 구축
 - 국제협약 연구반 구성운영